

성북의 미래, 현장에서 답을 찾다!

##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

성 북 구  
(건설관리과)

#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478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 : 2022. 3.

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2021년 기금 결산결과 반영 및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성북구 옥외광고정비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기금 설치개요

- 1) 설치근거 : 서울특별시성북구기금관리기본조례 제24조
- 2) 설치목적 :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
- 3) 설치연도 : 2020년

### 나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#### 1) 기금사업의 목표

-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 및 도시환경개선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

#### 2) 기금사업의 개요

-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정비, 도시경관개선, 간판시범거리조성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 중점 추진

## 다. 2022년도 기금사업 주요변경 개요

### 1) 기금 변경사유

- 2021년도 기금결산 결과 반영
- 행정안전부 주관 「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」과 관련한 사업비 교부로 추가 수입 및 지출이 발생

### 2) 2022년도 기금변경 내역

#### ○ 2022년도 기금 조성액

(단위: 천원)

| 2021년도말<br>조성액㉠ | 2022년도 증감액 |        |        | 2022년도말<br>조성액<br>(㉡=㉠+㉢)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| 계 ㉢=㉣-㉤    | 조성액㉣   | 사용액㉤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5,168          | 26,970     | 51,652 | 24,682 | 102,138                   |

#### ○ 2022년도 기금변경 총괄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| 기정예산    | 변경예산    | 증     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기금총운용액 | 107,575 | 126,820 | 19,245 |

- 2022년 기정예산 107,575천원에서 126,820천원으로 증액 편성
  - 시설비(시설비및부대비) 24,682천원 신규 편성
  - 2021년 기금결산 결과반영

### 3) 수입 및 지출 계획 변경(안)

#### ○ 수입계획 변경

(단위 : 천원)

| 항 목      | 기정예산(A) | 변경예산(B) | 증감액(B-A)   | 증감내용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계        | 107,575 | 126,820 | (증) 19,245 |                  |
| 공공예금이자수입 | 270     | 270     | -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그외수입     | 0       | 24,682  | (증) 24,682 | 신규 편성            |
| 기타수수료    | 16,000  | 16,000  | -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이행강제금    | 7,700   | 7,700   | -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과태료      | 3,000   | 3,000   | -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예치금회수    | 80,605  | 75,168  | (감) 5,437  | 2021년 기금결산 결과 반영 |

#### ○ 지출계획 변경

(단위 : 천원)

| 사업명-편성목          | 기정예산(A) | 변경예산(B) | 증감액(B-A)   | 증감내용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계                | 107,575 | 126,820 | (증) 19,245 |                  |
| 시설비<br>(시설비및부대비) | 0       | 24,682  | (증) 24,682 | 신규 편성            |
| 예 치 금            | 107,575 | 102,138 | (감) 5,437  | 2021년 기금결산 결과 반영 |

### 4) 2022년도 기금 조성(안)

(단위 : 천원)

| 조 성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사 용 액                      |   | 2022년말 조성액<br>(잔 액)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26,8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24,682                     |   | 102,138                       |
| • 공공예금이자수입 : 270<br>• 그 외 수 입 : 24,682<br>• 기 타 수 수 료 : 16,000<br>• 이 행 강 제 금 : 7,700<br>• 과 태 료 : 3,000<br>• 예 치 금 회 수 : 75,168 | - | • 시설비(시설비및부대비)<br>: 24,682 | = | • 2023년도 이월(예치금)<br>: 102,138 |

### 3. 관련근거

#### 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**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#### 나.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

**제24조(옥외광고정비기금)** ① 이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이 조례에서 “옥외광고물법”이라 한다)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(이하 이 조례에서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
2. 옥외광고물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3. 옥외광고물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4.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
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 전입금
6.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
7.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

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광고물 등의 정비
2. 경관개선
3.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
4.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
5.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
6.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